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384호 2013.10. 7(월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017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01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7
- 하동군 조례 제2019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9
- 하동군 조례 제2020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16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09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7
- 하동군 규칙 제109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19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3-5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9차) 27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3-618호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박금조) 29

회 람									
----------------	--	--	--	--	--	--	--	--	--

하 동 군 공 보

(2) 제 38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7호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을 장려하기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2. “개장”이란 매장한 시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지내는 것을 말한다.
4. “화장시설”이란 시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5. “화장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군의 지원금을 말한다.
6. “연고자”란 사망한 사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다른 지역에 주소를 둔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군에 주소를 두고 화장신고를 한 경우
3. 군 내에 설치된 기존 분묘의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마치고 화장시설에서 화장을 실시한 연고자(화장 후 다시 분묘에 매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분묘를 개장한 경우
3. 죽은 태아를 화장한 경우

제5조(지원금액) 화장장려금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려금은 사망자 1구당 30만원으로 하되, 화장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자연장지에 자연장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5만원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2. 기존 분묘의 개장유골에 대한 화장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1구당 1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 또는 개장일부터 90일 이내에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자를 화장한 경우 : 화장증명서
2. 개장에 따른 화장인 경우 : 개장신고증명서, 화장증명서

하 동 군 공 보

(4) 제 384 호

- ② 제1항에 따라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화장장려금을 지급한다.
- ③ 화장장려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④ 군수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바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할 경우
2. 사망 및 개장한 자의 연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납부장소, 납부기한 등을 정하여 통지하고, 환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규정에 준해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화장장려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화장장려금 지급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5) 제 384 호

[별지 제1호서식] <제6조관련>

제 호					처리기간		
화장장려금			<input type="checkbox"/> 시체 <input type="checkbox"/> 개장	지원 신청서		7일	
사망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망장소		사망사유 사망연월일		. . .		
	화장 장소		화 장 연 월 일		. . .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망자와의 관 계		
	주 소				전화번호		
	* 지급계좌번호 : 거래은행 : 예금주명 :						
음면장 확 인	연고자 <input type="checkbox"/> 확인 <input type="checkbox"/> 미확인		음·면장 (직인)				
	자연장 <input type="checkbox"/> 실시 <input type="checkbox"/> 미실시						
「하동군 화장장려금 지원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장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하동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화장신고증명서 또는 화장시설 사용료 영수증 2. 시체(개장유골) 자연장 증명서(자연장에 한함) 3. 통장사본							

본인은 화장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42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주민등록, 가족관계 사항 등)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하 동 군 공 보

(6) 제 384 호

[별지 제2호서식] <제6조관련>

화장장려금 지급대장

일련 번호	사망자		신청인			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소 (소재지)	성명	생년 월일	주소	지급일	계좌번호	지급액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8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1호 중 “재난관리과”를 각각 “안전총괄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1호가목 중 “민방위, 재난관리”를 안전·재난관리, 민방위“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하동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복구지원담당주사”

하 동 군 공 보

(8) 제 384 호

를 “안전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② 「하동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③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재난관리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한다.

④ 「하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⑤ 「하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3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⑥ 「하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5항 중 “재난관리과장”을 각각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19호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분야의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하동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드높이기 위해 하동군 농특산물 명인 육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① “하동군농특산물”이란 하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
- ②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란 하동군에 주소를 두고 하동군농특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거나, 제조·가공하는 사람으로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조(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하동군농특산물명인(이하 “명인”이라 한다)의 발굴·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하동군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①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심사
- ②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전승 등에 관한 자문
- ③ 농특산물 명품화 등에 관한 자문
- ④ 그 밖에 명인 육성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통상교류과장, 경제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하동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 2명
2. 해당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

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 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
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아무런 연락 없이 2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
4.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9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전략통상담당주사, 서기는 담당직원이 된다.

하 동 군 공 보

(12) 제 384 호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하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명인의 발굴 및 육성지원 등

제12조(지정시기) 명인은 매년 1회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지정분야 및 인원) ① 명인의 지정분야는 농특산물 생산, 제조·가공분야로 하며, 지정인원은 매년 분야별 1명으로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당해연도에 책임자가 없을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4조(대상범위) 하동군내에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생산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 되는 자에 한한다.

1. 신청상품이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을것
2. 명품으로써 희소성과 인지도가 높아 경쟁력이 있을것
3. 신청자가 보유한 기술을 접목하여 향후 상품화할 때 경쟁력이 있을 것

제15조(자격 및 신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소와 사업장이 관내에 있으면서 농특산물 또는 농특산물을 원료로 5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상품을 생산하고 있는 자
2.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6조(지정절차 등) ① 명인은 제14조에 따른 신청자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군수가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는 서류심사와 필요한 경우 본인이 직접 생산하는 과정을 통하여 전시·시식·품평 등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지정기한) 명인의 지정 효력은 제19조에 따라 지정이 취소될 때까지로 한다.

제18조(행·재정적 지원) ① 군수는 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당시 품목의 생산 및 식품영업을 업으로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
2. 군 홈페이지 등에 명인코너 설치 및 등재
3. 축제, 전시회·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
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등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해당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 지원
2. 지정품목과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 등 판매촉진 및 홍보사업 우선지원
3. 그 밖에 농특산물 명품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9조(지정취소) 군수는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하 동 군 공 보

(14) 제 384 호

2. 지정 상품 생산을 중단 하였을 경우

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 하였을 경우

4. 명인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지정목적에 위반되는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5. 그 밖에 군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20조(명인의 승계)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

제21조(명칭 사용의 금지) ① 명인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명인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7일의 기간을 정하여 철거 및 삭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시정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로 철거등을 할 수 있다.

제4장 명인의 사후관리 등

제22조(명인 자격유지를 위한 교육) 명인으로 지정된 자는 농업연수원 등 군이 인정 하는 관련 교육기관 등에서 연 8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 ① 군수는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상황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명인의 지정요건 또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하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6) 제 384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조례 제2020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의 제목 “(기금의 조성)”을 “(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2월 26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91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본문 중 “재난관리과장”를 “안전총괄과장”로 한다.

제5조제3항의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소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난관리과장 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18) 제 384 호

[별표 1]

하동군 본청 실·과·소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 민방위 및 120민원 기동대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비상대비 및 민방위 업무
	3 전시 민방위계획 및 인력동원 계획 수립 시행
	4 정부 및 자체 연습계획 조정·통제
	5 예비군육성 지원
	6 소방업무 지원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
	7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8 농어촌 보안등 설치 유지관리
	9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나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7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사업시행
	8 방재의 날 행사 및 방재 도상훈련
	9 재해 사전대비 업무
	10 풍수해 보험 업무
	다 하천 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생략

하동군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공포한다

2013년 10월 7일

하 동 군 수

하동군 규칙 제1092호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

하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 동 군 공 보

(20) 제 384 호

[별표]

보좌·보조기관의 직급·직렬별 정원(제2조 관련)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음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총 계	615	261(2)	68	48(▽1)	9	23	13	21	172 (▽1)
정무	정무직 계	1	1							
	정무직	1	1							
일 반 직	일반직 계	518	239(2)	66	20(▽1)	9	8	6	16	154 (▽1)
	4급 소계	1	1							
	서기관	1	1							
	4~5급소계	3	2	1						
	서기관·행정사무관	1	1							
	서기관·행정·사회복지 사무관	1	1							
	기술서기관·보건사무관· 간호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	1		1						
	5급 소계	34	12	1	4	1	1	2	1	12
	행정	3	2					1		
	의무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농업	6	1							5
	행정·사회복지·농업									
	행정·시설	5	4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수의(지도)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해양수산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지도관	1			1					
농업·지도관	2			2						

하 동 군 공 보

(21) 제 38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 업 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6급 소계	149	76	12	7	2	3	1	5	43
	행정	<u>14(▽2)</u>	<u>13(▽1)</u>	1				<u>0(▽1)</u>		
	세무	1	1							
	사회복지	<u>0(▽1)</u>								<u>0(▽1)</u>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진료	5		5						
	환경	2	2							
	시설	7	7							
	행정·세무	<u>12(▽1)</u>	5						1	<u>6(▽1)</u>
	행정·사회복지	<u>5(▽1)</u>	<u>5(▽1)</u>							
	행정·농업	<u>28(▽1)</u>	9		<u>3(▽1)</u>			<u>1(1)</u>	1	<u>14(▽1)</u>
	행정·녹지	<u>3(1)</u>								<u>3(1)</u>
	행정·보건	0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u>13(▽1)</u>	<u>12(▽2)</u>							<u>1(1)</u>
	전산·방송통신	1	1							
	농업·녹지	3	2		1					
	농업·농촌지도사	0								
	농업·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4								4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u>5(2)</u>	2		<u>1(1)</u>					<u>2(1)</u>
	행정·세무·시설	<u>3(2)</u>	<u>2(2)</u>						1	
	행정·세무·전산	<u>1(1)</u>	<u>1(1)</u>							
	행정·전산·농업	<u>3(1)</u>	<u>2(1)</u>						1	
	행정·전산·시설	2	1							1
	공업·환경·보건	1						1		
	행정·공업·시설	<u>4(1)</u>	<u>2(1)</u>			1				1
	행정·농업·녹지	3	1		1					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시설	5					1			4
행정·해양수산·시설	<u>2(▽1)</u>	<u>1(▽1)</u>							1	
행정·보건·간호	4		3						1	
행정·시설·환경	0									
행정·해양수산·보건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공업·환경·시설	4	2					2			
행정·농업·녹지·환경	2	1							1	
행정·보건·간호·의료기술	1		1							

하 동 군 공 보

(22) 제 384 호

구 분	직 급 별	기 관 별	합 계	본 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 과	유 면	
					보 건 소	농 업 기 술 센 터	체 육 시 설 사 업 소	상 하 수 도 사 업 소			
일 반 직	7급 소계		158	72(2)	17	6(▽1)	3	3	2	6	49(▽1)
	행정		19	12			1		2	1	3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8(1)	2(1)						1	5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8				2		1	4
	의료기술		4		4						
	보건		2		2						
	보건진료		6		6						
	환경		2	2							
	방송통신		0								
	행정·세무		5	3							2
	행정·사회복지		5	4							1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0(▽5)	4		0(▽1)				2	14(▽4)
	행정·시설		15(1)	10(1)			1				4
	행정·환경		1	1							
	행정·방송통신		1(1)								1(1)
	공업·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농업·수의		2			2					
	보건·약무		1		1						
	보건·환경		1		1						
	행정·세무·농업		3	1							2
	행정·세무·시설		3	1							2
	행정·전산·농업		3(1)	2							1(1)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3(1)	2							1(1)
	행정·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보건		1								1
	행정·농업·시설		10(▽1)	7							3(▽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		2(1)	1							1(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보건·시설		0								
행정·보건·환경		2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보건·간호·의료기술		3		3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행정·농업·보건·환경		0									

하 동 군 공 보

(23) 제 38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8급 소계	129	54	33	1	2		1	3	35
	행정	13(▽1)	9(▽2)					1		2
	세무	1	1							
	사회복지	8(1)	2(1)						1	5
	공업	1			1					
	공업(무대.음향)	0								
	해양수산	1	1							
	보건	10		10						
	간호	1		1						
	의료기술	9		9						
	보건진료	4		4						
	식품위생	2		2						
	환경	1	1							
	시설	8(▽1)	4(▽1)							4
	행정·세무	4(1)	4(1)							
	행정·사회복지·시설	7	2						1	4
	행정·전산	3(▽1)	3(▽1)							
	행정·농업	12(1)	5(1)							7
	행정·해양수산·시설	4	2							2
	행정·보건	0								
	행정·시설	5(▽1)	4(▽1)				1			
	세무·환경	0								
	전산·방송통신	2(1)	2(1)							
	공업·환경	2	2							
	농업·녹지	3(1)	3(1)							
	녹지·시설	0								
	행정·보건·간호	4		4						
	보건·환경	0								
	약무·보건	1		1						
	행정·세무·전산	0								
	행정·세무·농업	8	1							7
	행정·농업·농촌지도사	0								
	행정·농업·시설	6	4							2
	행정·보건·환경	3							1	2
	행정·공업·시설	5	4				1			
행정·환경·시설										
세무·공업·시설										
보건·간호·의료	2		2							

하 동 군 공 보

(24) 제 38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일 반 직	9급 소계	44	22	2	2	1	1	0	1	15
	행정	3	2				1			
	전산									
	사회복지	9(3)	3							6(3)
	환경	2(1)	2(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5(▽3)	2						1	2(▽3)
	행정·전산									
	행정·농업	4	2							2
	행정·시설	8(▽1)	7(▽1)			1				
	농업·녹지	1	1							
	농업·수의	2			2					
	보건·간호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3	1							2
	행정·농업·시설									
	행정·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하 동 군 공 보

(25) 제 38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체육시설 사업소	상하수도 사업소			
기 능 직	기능직 계		66	18	2	3	0	15	5	5	18
	6급 소계		7	2					2	2	1
	사무		3						1	1	1
	운전		4	2					1	1	
	7급 소계		23	5	2	1		2	2	3	7
	운전		11	3	2					2	4
	사무		6			1		1	2		2
	전화상담		1								1
	기계		1					1			
	전기		1	1							
	통신		1							1	
	선박항해		1	1							
	8급 소계		19	8		2				1	8
	열관리		1	1							
	선박기관		1	1							
	운전		9	2		1					6
	조무		3	3							
	방호		1			1					
	사무		4	1					1		2
	9급 소계		18	3				13			2
	전화상담										
	기계		3					3			
	열관리·기계										
	운전		3	1							2
	사무										
	조무										
	선박		1	1							
	방호										
	전기		3	1				2			
	전기·통신										
화공		4					4				
보건		4					4				

하 동 군 공 보

(26) 제 384 호

구분	직급별 기관별	합계	본청	직속기관		상하수도 사업소	의 회 사무과	읍	면
				보건소	농 업 기술센터				
별 정 직	별정직계	3	1				2		
	5급상당 소계	1					1		
	행정. 별정	1					1		
	6급상당 소계	2	1				1		
	비서	1	1						
	의회전문위원	1					1		
연 구 직	연구직 계	2	2						
	학예연구사	1	1						
	기록연구사	1	1						
지 도 직	지도직 계	25			25				
	농촌지도사	25			25				

하동군 고시 제2013 - 54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49차)

도로명주소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9. 30.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범바위길 70 외 6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7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08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1.7.29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28) 제 384 호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중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882-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구학길 52-8	20070618	오래된 학이 사는 마을이라하여 붙여진 구학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 산219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범바위길 70	20070618	범의 형국을 갖춘 옛 지명에서 유래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611-1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돌고지로 1333-106	20070618	횡천과 옥종의 경계지점에 있는 재로서 재를 넘을때 산모퉁이를 돌고 돌아 넘는다고해서 돌고지재라고한 옛지명 사용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리 26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삼신길 14-7	20070618	마을의 북쪽에는 지리산이 있고 서쪽에는 봉래봉이 있다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애치리 68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숙재1길 158	20090302	마을명에 일련번호방식의 첫번째 도로명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34-4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경충로 140	20090702	정기룡 장군 추모 사당을 지나가는 도로로 지역의 역사성 반영	신청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정수리 9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세종태실로 626-26	20090702	곤명면 은사리에 있는 세종 태실지의 명칭을 도로명으로 부여	신청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공고

공고 제2013-618호

유해야생동물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포획허가 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2013. 9. 27

하 동 군 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사항

- 포획 목적 : 유해야생동물 구제
- 포획 기간 : 2013. 09. 30 ~ 2013. 10. 30
- 허가 내역

허가지역	허가자 (포획자)	포획방법	포획기간	포획동물 및 수량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내	박금조	총렵 (자력)	2013. 09. 30 ~ 2013. 10. 30	허가기간 내 멧돼지 5마리, 고라니 5마리 이내

○ 포획제외지역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4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및 동법 제55조(수렵의 제한),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안전수칙)에 해당하는 지역 및 장소
- 군수가 정한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에 해당하는 장소